

산학협력선도사업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하다) 총장직속 기구인 산학협력선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9.)

제2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5. 6. 1.)

1. 산학협력 역량강화(다양화 및 특성화)
2. 산학협력친화형 교육시스템 운영
3. 수요자 주도형 산학협력체제 구축
4.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운영
5. 창조혁신허브센터 설치운영
6. 그 밖에 사업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임무

제3조(부서 및 업무) ① 사업단에는 사업부와 성과관리부 및 행정지원실을 두며 부설기관으로 스마트기술융합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창조혁신허브센터를 둔다.(개정 2013. 8. 19, 2014. 8. 18, 2015. 6. 1.)

② 사업부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특화인재양성과정 운영 등을 담당하며, 성과관리부는 추진사업 성과물 관리,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단위 사업 간 연계 및 통폐합 기획과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 8. 19, 2014. 8. 18.)

③ 행정지원실은 각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사무, 일반사무, 회계, 보안, 직인관리와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스마트기술융합센터는 스마트기술 융합분야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 8. 19, 2014. 8. 18.)

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과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 18, 2015. 6. 1.)

⑥ 창조혁신허브센터는 캡스톤디자인과 창업동아리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시작품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단계 기술로 성숙시키는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 6. 1.)

제4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각 부와 센터에는 부장과 센터장 및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8. 18.)

② 사업단운영의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 중점교원, 전임연구원, 행정직원, 창업매니저, 취업매니저,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8. 18.)

③ 사업단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임면) ① 사업단장과 부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

② 각 부장과 센터장, 책임교수는 교원으로 겸보하되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4. 8. 18, 2015. 6. 1.)

③ 행정지원실장은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

④ 산학협력 중점교원, 전임연구원, 행정직원, 창업매니저, 취업매니저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 18.)

제6조(임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운영을 관장한다.

②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과 센터장은 각 부와 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지원실의 일반직원과 조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둔다.

제3장 사업추진위원회

제8조(설치) 사업단의 사업 추진과 관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하고 교내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학생복지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선도사업단장으로 한다.(개정 2012. 8. 1, 2014. 9. 1, 2015. 3. 1.)

③ 교외위원은 관련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등의 CEO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고 약간 명을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업단의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사업단 예산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단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④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제12조(설치) 사업단에 대한 사업집행 성과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교내위원은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참여학과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을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③ 교외위원은 관련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등의 CEO 또는 전문가로 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사항)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업기간 중 평가지표 대비 사업 진척도에 관한 평가
- ② 연차별 핵심성과지표 달성여부에 관한 평가
- ③ 평가결과의 차년도 사업 반영 계획에 관한 심의
- ④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부단장, 사업부장, 성과관리부장, 스마트기술융합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조혁신허브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참여 학과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을 사업단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3. 8. 19, 2014. 8. 18, 2015. 6. 1.)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약간 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1.)

- ① 사업단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 ②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사업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연도별 사업단 사업 계획(사업비 집행계획 포함)의 수립
- ⑤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창조혁신허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산학공동프로젝트와 유사 프로젝트 심의, 연구업적 심의
- ⑦ 고가기자재 도입 심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⑧ 교육과정 개설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장 재정

제20조(예산) 사업단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금
- ②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③ 대학의 대응자금
- ④ 산업계의 학·연·산·관 협력기금,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 ⑤ 협력업체, 협력기관의 대응자금
- ⑥ 교육, 연구 수입
- ⑦ 사용료, 관리비 수입
- ⑧ 기타 수입

제21조(회계) 사업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단,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2조(예·결산과 사업계획)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장학금

제23조(장학금) 사업단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단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사항) 사업단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위 명칭변경)
6.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